공고

기 안 용 지

공고 제270호

분류기호 문서번호	422.4.	(전화번호 242)	전결규정 조 항 전결사항
처리기간		결 재 자	
시행일자	71. 12. 31.	제2부시장	결재 1971.12.31 시장실
보존년한			

보조기관			협조
도시계획국장	12.29		경지과장
환지과장	12.29		서무과장
환지3계장	12.27.		도시계획과장
			계획계장
			시민과장
			법무과장 (공고안결재)
			관리계장
			문서관리계장
			환지계장

기안책임자	정 영 호	71. 12. 27
경유 수신 참조	각 안 참 조	발신
제 목	망우 토지구획정리 사업기간 연기	

검열 1971-12-3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고 윤 1

제안 내부결재

건설부 공고 제 호 (67. 1. 21)로 인가를 득한 망우토지구획정리사업 정 시행 은 인가시보다 여러가지 여건(재원미확보로인한 공사부진및 지구확장에 따른 사업량증대 사업계획 일부 변경, 변동으로 인가 시행기간내에 시공과 확정처분 관인 기타 잡무처리등으로 완료할수 없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조 동법제13조에 의거 사업시행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각안과 같이시행코저 합니다. 송

. . . . . . 아 래 123

0201-1-8A 4-1 190mm×268mm 백상지50g/m2

1969. 11. 10. 승인 (서울특별시립 직업보도원 인쇄)

4-2

지구명	인가면적	당초준공예정일	연기예정일	비
망우지구	1,957,772평	693,602평	1,264,170평	64.6

제2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망우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 연기

서울도시계획사업 망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공사시공일부와 확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조 동법 제13조에 의거 사업시행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기 하였기 공고 합니다.

1971. 12. .

서 울 특 별 시

사업연기 조서

지구명	인가면적	당초준공예정일	연기예정일	비
망우지구	1,957,772평	70. 12. 31.	73. 12. 31.	3년

제3안

수신 동대문구청장 발신 시장

제목 동 건

서울도시계획사업 망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공사시공일부와 확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사업기간을 별첨 공고문사본과 같이 연기 되였기 관할구청 게시판에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널리 알려 주기 바람.

첨부 공고문 사본 1 부. 끝.

제4안

수신 공보실장 . . . . . .

법무과	
법무과장	
법제계장	
심사자	

124

제목 동건

1. 별지 공고문사본과 같이 망우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을 연기하였으니 일간신문및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 공고종별 시중일간지

나. 예산액 금 48,000 원

2단 × 30행 × 4,000원 × 2개사 = 48,000원

다. 지출과목 망우지구 사무비 수수료

제5안

수신 건설부 장관 발신 시장

참조 단지계획과장

제목 동 건

당시가 실시하고 있는 망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인가당초보다 여러가지 여건 (재원미확보로 인한 공사부진 및 지구확장에 따른 사업량증대 사업계획 일부변경) 변동으로 인가시행 기간내에 시공과 환지처분 기타 잔무처리를 완료할수 없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조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별첨 공고문사본과 같이 기간을 연기하였기 보고 합니다.

첨부 1. 공고문 사본 1 부.

2. 지연사유 및 기간연기 이유 1 부. 끝.

총무처 ... 1967. 4. 4. 승인

乙 4-3

190mm×268mm (... 70g/㎡) 조달청 (500,000매 인쇄)

지연 사유 및 기간 연기 이유

사업시행면적 1,957,772평중 1,791,[illegible]평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시공을 진행하고 있으나 재원미확보로 인한 공사부진과 1969. 11. 11. 건설부 공고 제115호로 802,000평을 편입지구 면적확장으로 사업량 증대를 갖어왔고 환지 미정착 지역인 공능동 일부 (261,000평) 에 대하여는 건설부 공고 제198호 (71. 4. 7)로 서울도시계획 재정비 정리에 따른 노선 위치 변경과 용도 지역 변경됨에 따라 동지역내의 구획 및 가로를 재조정하여 사업계획 일부 변경인가를 득한후 사업을 시행키 위하여 기간을 연기코저함